

가

Appraisal Report

	24111101
	(2024 32974)

(가 , 가 (改作), 가 (轉載))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I. 대상물건 개요

1. 평가목적

“ ”
가 .

2. 평가기준

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.

3. 감정평가 대상 물건

가. 대상 건물 개요(건축물대장 기준)

				(㎡)			
1	320-71			99.82	/	2017.01.26	-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4.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1월 20일임.

5.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

실지조사는 2024.11.18. ~ 2024.11.20에 수행하였으며,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조사·확인하였음.

6.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

가.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

「가」 5 1 가 .

나.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

7. 기타 참고사항

- 가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II.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과정

1. 재조달원가 산정 및 경제적 내용연수 결정

가. 표준단가 검토

				가(/㎡)	
01-01-06-06		/ /	4	1,744,000	40 (35 45)

: , 2023 가

나. 부대설비 보정단가 검토

		가(/㎡)
		가
	-	

: , 2023 가

다.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결정

가 , , ,
가 .

				가 (/㎡)
1	1		40	1,500,000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2. 건물단가 산출 및 결정

			가 (/㎡)				가	가 (/㎡)
1	1		1,500,000	40	7	7	33/40	1,237,000

가 : / ()

3. 건물 감정평가액

		가 (/㎡)	(㎡)	가 ()	
1	1	1,237,000	99.82	123,477,340	-
		-	-	123,477,340	-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

III.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

1. 감정평가액결정

	가 ()	
	123,477,340	-
	6,060,000	
	129,537,340	-

2. 그 밖의 사항

--

가

[: 2024-11-20]

					(㎡)		가		
							가		
		320-71			660				
1	[320-71		1					
	240-2			1	99.82	99.82	1,237,000	123,477,340	1,500,000 x 33/40
	()							
ㄱ					(32.0)	32.0	180,000	5,760,000	
				1					
ㄴ					(6.0)	6.0	50,000	300,000	
				1					
							₩129,537,340.-		

가

1.	3.	5.
2.	4.	6.
		()

1. 건물의 구조

경량철골구조 경량트러스외패널싱글마감 경사지붕 단층건으로써
 외 벽 : 사이딩판넬마감.
 내 벽 : 벽지도배 등
 창 호 : PVC샷시창임.

2. 이용상태

주택임.

3. 설비내역

온수난방설비, 급수설비, 수세식 위생설비 등 되어있음.

4. 부합물 및 종물

별첨 「사진용지」 참조.

5. 공부와의 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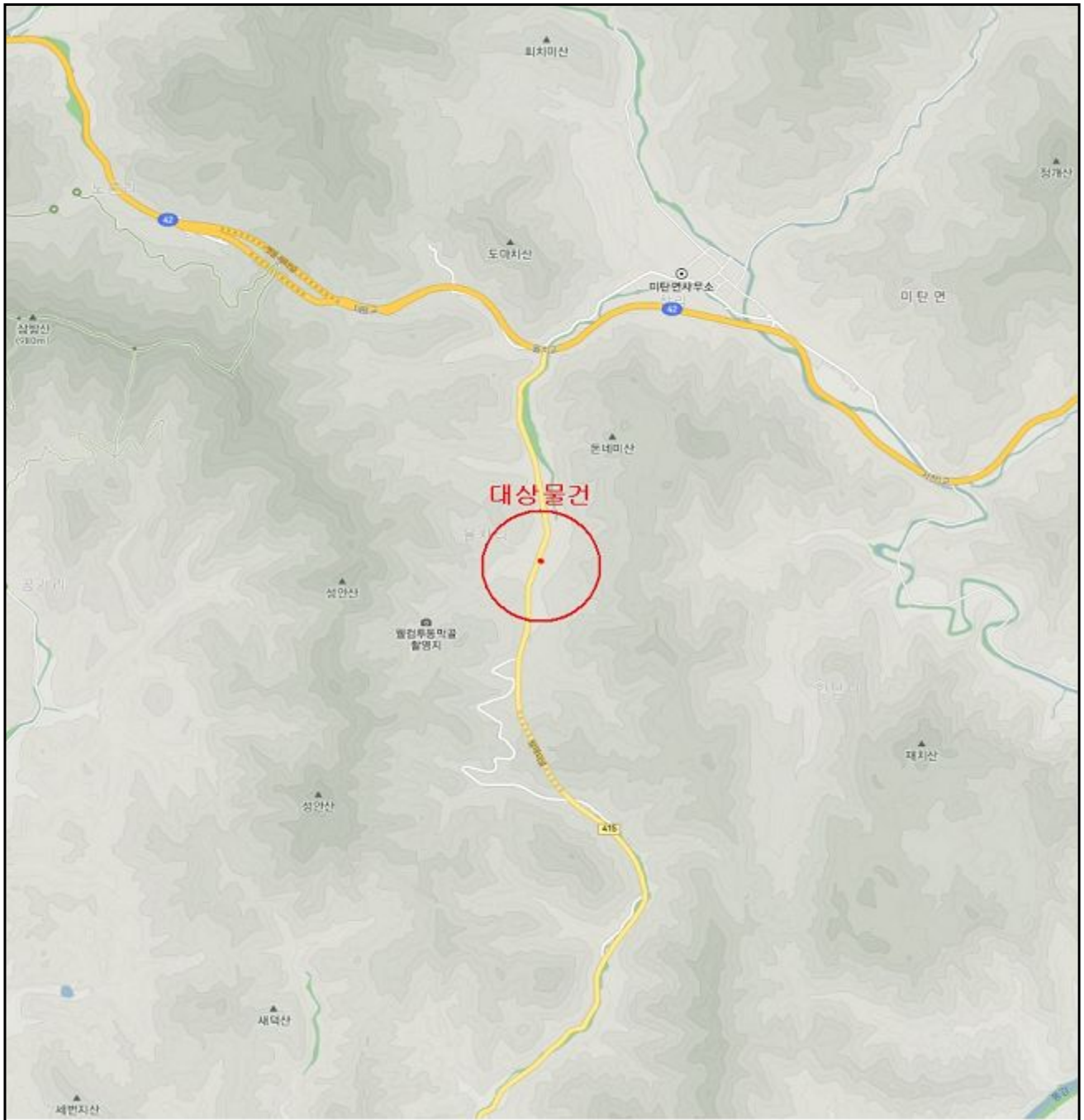
없 음.

6.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미상임.



320-71





-일련번호1) 99.82㎡-

제시외 건물

ㄱ : 32.0㎡

ㄴ : 6.0㎡



【 】



【 】



【 】